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8.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83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3. 이도희의원 대표발의(11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1. 28.)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이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과 유기동물의 입양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반려동물의 치료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비용에 관한 지원 사항을 추가로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반려견 돌봄 쉼터에 관한 정의 및 운영 조항 신설
(안 제2조제1항제5호, 안 제9조)
- 동물등록 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제1항제3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 삭제(안 제16조5항, 안 제1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조례안 예고 : 2023. 11. 06. ~ 11. 10.(5일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대상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안 제2조제1항제5호 “반려견 돌봄 쉼터” 정의와 안 제9조에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제1항제3호에 “동물등록 시 내장형 무선 전자개체 식별 장치 장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또한 안 제13조에는 “유기동물의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2개 항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 지난 추석명절 기간 동안 서초구와 노원구는 한시적인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한 적이 있고,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우리동네 펫위탁소’ 26곳을 운영하기도 하여 반려 동물을 돌보는 쉼터 운영의 필요성과 그 수요가 있음이 분명한 상황임.
- 유기동물 입양 지원과 관련하여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최근 서울동물복지지원 센터 또는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운영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러한 시설은 광역형 센터보다는 주민 접근성이 높은 기초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의미가 클 수 있을 것임.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조례 제2조(정의)¹⁾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반려견 돌봄

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4.>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4.14.>

2.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4.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등과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5.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4.14.>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쉼터”의 정의를 “소유자등이 반려견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소유자등을 대신하여 한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하여 돌봄 쉼터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 신설조문인 안 제9조는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제3항에서 그 밖에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 (유기동물의 입양지원) 제2항에서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여, 이는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을 시행해야 하는 조항이 되므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필요할 것임.

- 집행부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단가를 평균 8천원 수준으로, 시술비는 4만원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고, 연간 시술대상을 2천마리로 추산하여 소요예산을 96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 있어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목적이 강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기 언급한 예산 수반이 필수적이기에 쉼터 운영 위탁비용 등 집행부서의 의견청취와 논의가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3.4.14.>